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-60호

「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## 강릉시 의회의장

#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정이유

-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위기대응협의체 설치 및 구성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(안 제6조)
- 마. 예산의 지원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국 행정전문위원/☎033-640-4033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

#### [보내실 곳]

- 우 편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
- 이메일: jhyoon93@korea.kr
- 팩 스: 033-640-4070

- 붙임 1.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 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붙임 1]

강릉시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호

## 강릉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·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정신질환자”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”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4. “정신건강증진시설”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5. “정신의료기관”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6. “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”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사업장 및 경찰서, 소방서와 구축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강릉시민

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·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및 추진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**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위기대응협의체(이하 “위기대응협의체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 및 역할 분담
2.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
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

**제5조(위기대응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** ① 위기대응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, 위기대응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.

③ 강릉시 정신건강증진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

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강릉경찰서
2. 강릉소방서
3.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
4.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5.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그 밖에 위기대응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지원체계 구축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)** ① 시장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,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및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입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,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7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

을 지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예산의 지원)**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비용
2.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비용
3. 위기대응협의체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
4.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예방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 규 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| 제·개정안 내용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|     |